

제2장 상품 무역

제1절 공통규정

제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수입허가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제2.2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들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2절 내국민 대우

제2.3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3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들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당사국들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4.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든 자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인하 또는 철폐를 한 후에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

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나.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4절

특별 제도

제2.5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일시 반입을 촉진하고,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 상품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고,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가 있으며, 그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상품이 관세 및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조건부로 면제받고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당국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그 상품이 당사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을 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

될 수 있는 담보 또는 보증을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입 및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과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동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도록 허용한다.

7. 어떠한 당사국도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차량 또는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로를 통하여 자국 영역에서 나가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나.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8.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수입자가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해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 만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2.6조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하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절

비관세조치

제2.7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한쪽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려고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다른 쪽 당사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면서,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을 필요한 한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2.8조

수입허가

1. 각 당사국은 모든 자동 및 비자동 수입허가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당사자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가.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3.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렇게 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9조

관세평가

당사국들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7조의 규정과 관세평가협정의 제1부 규정 및 부속서I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2.10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당사국들은 국제수지 목적상 제한조치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상품 무역을 위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12조 및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를 따른다.

제2.11조

국영무역기업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

고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6절 제도 규정

제2.12조 상품무역위원회

1.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장과 제3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따라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과 제3장(무역구제)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 및 점검하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 보고 및 권고하는 것
 - 나. 이 협정에 따른 관세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들 간 상품 무역을 증진하는 것
 - 다. 당사국들 간 상품 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 라. 시의적절하게 전환 지침을 채택 및 검토하고 당사국들의 관세양허표를 전환하며 전환된 관세양허표 및 연계표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 양허표를

최신화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 그리고

- 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들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부속서 2-가-1
한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4조에 따른 한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 가.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5”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다.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1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라.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15”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마.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2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바.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TR”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즉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로 인하되어,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퍼센트로 유지된다. 그리고

사.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E”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2.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일이 한 해의 4분기 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협정의 발효 후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이 한 해의 4분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후 두번째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3.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품목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그 품목에 대하여 양허표에 표시된다.

5.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한국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6.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21년 1월 1일에 유효한 한국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7. 이 부속서는 2021년 1월 1일에 개정된 한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K” 라 한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부속서 2-가-2

걸프협력회의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4조에 따른 걸프협력회의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 가.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5”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다.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1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라.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15”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마.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2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바.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TR”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1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여, 이행 10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퍼센트로 유지된다.

사.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E”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아. 단계별 양허유형 “PROH(금지품목)” 인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 단계별 양허유형 “SpGo(특별관심품목)” 인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일인 한 해의 4분기 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협정의 발효 후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이 한 해의 4분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후 두번째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3.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품목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그 품목에 대하여 양허표에 표시된다.

5.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단위로, 바레인의 경우 바레인 디나르 단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사우디 리알 단위로, 오만의 경우 오만 리알 단위로, 카타르의 경우 카타르 리알 단위로, 쿠웨이트의 경우 쿠웨이트 디나르 단위로, 최소한 가장 근접하게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6.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22년 1월 1일에 유효한 걸프협력회의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7. 이 부속서는 2022년 1월 1일에 개정된 걸프협력회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이하 “GCC HS” 라 한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GCC HS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GCC HS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GCC HS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